

#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93 호
----------	----------

제출연월일 : 2009. 11.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제8014호 2006. 9. 27, 시행 2007.9.28)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 범위를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 부터 200m 이내로 지정(안 제2조)
- 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거 청소·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안 제5조)
- 다.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관리·용도제한·수질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 제10조)
-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 마.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발생량 산정 및 m<sup>3</sup>/일당 부담금 산정방식을 단순화함(안 제19조)
- 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금액을 정함(안 제24조)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9- 620호(2009. 07. 14.)
  - 의견제출 사항 :
-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하수도법 제15조·제26조·제27조·제41조·제61조·제6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35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
  - 지하수법 제7조·제8조 - 건축법 제22조 - 지방세법 제27조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제38조의2
- 다. 관련부서 협의 됨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환경과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5. 분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형상에 따라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형지물을 경계로 할 수 있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성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결과 등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

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 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데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발생량 산정예는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sup>3</sup>/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sup>3</sup>/일 이상인 경우 10m<sup>3</sup>/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성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sup>3</sup>/일)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또는 신고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이하“분뇨 등”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및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별표 6의 사용료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5조(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하여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등의 수집 및 청소 시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스스로 청소한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오니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일분 반입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사용전표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판매하고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반입 시 처리시설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에서 회수한 전표는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과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 (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원)
가 정 용	1~10	100
	11~20	140
	21~30	160
	31~40	180
	41~50	200
	51이상	220
업 무 용	1~20	180
	21~50	210
	51~100	240
	101~300	270
	301이상	300
영 업 용	1~30	190
	31~50	220
	51~100	250
	101~300	280
	301이상	310
욕 탕 용	1~200	200
	201~300	220
	301~500	240
	501~600	260
	601이상	280
산 업 용	1m <sup>3</sup>	150
침출수등	수질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적용	

주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

##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안)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단위 : m<sup>3</sup>/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한 건축물의 오수발생 량은 0으로 봄
						7	18	-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한 건축물의 오수발생 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 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21조제2항 관련)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1 + \left(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 (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제25조 관련)

-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0.1m <sup>3</sup> 당	1,300원	200원	1,500원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0.75m <sup>3</sup> 까지)	13,650원	1,500원	15,150원
초과요금 (0.1m <sup>3</sup> 마다)	910원	200원	1,110원

[별표 7]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업종 \ 구분	감면비율
가정용	30%
일반용	15%
욕탕용	10%
산업용	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 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 공공하수도사용료(100원)-감면액(100원×20%) = 20원

= 80원(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서식]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고성군 읍·면·리 번지( 통 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sup>3</sup> /일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		검사일자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